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상훈 교통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상실 범죄현황 자료 중 최근 3년간(2016년~2018년 8월) 총 13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범죄(59건, 45%)가 성범죄(강간, 강제추행, 간음 등)였으며, 그 뒤로 마약 범죄(30건, 23%)가 가장 많았습니다.

□ 무엇보다도 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들이 관련법의 취약점을 이용하여, 전체 131명 중 17명이 재취업을 통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, 이 중에는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택시기사도 7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며,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%, 준수사항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,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대한 보조금의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